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03. 12.
발 의 자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별표5가 개정(대통령령 제18161호, '03. 12. 18)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시.군.자치구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550,000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월 900,000원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게도 월 200,000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한다.